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표지와 같은 면지

| 목차 |

제1편 제도 개요

Ⅰ. 교육급여 전체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 내용 ····· 2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 3
1. 기관별 역할 ····· 3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 4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제3편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 16
1. 급여의 목적 및 기본원칙 ····· 16
2. 급여의 보호 등 ····· 17
3. 급여의 결정 ····· 18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 19
5. 교육급여 내용 및 지원 기준 ····· 20

Ⅱ. 급여의 지급 ····· 25
1. 급여 지급 절차 ····· 25
2. 급여의 중지 ····· 31
3. 전·입학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관리 ····· 34
4. 상급학교 진학 시 급여 지급 ····· 35
5. 계좌관리 ····· 35
6.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 38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 증명서 발급 ····· 40

Ⅱ. 보장비용의 징수 ····· 41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41
2. 결손처분 ····· 44
3. 소급지급 ····· 45
4. 소멸시효 ····· 45
5. 고발조치 ····· 45

Ⅲ. 반환명령 ····· 46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법 제47조] ····· 46
2.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 46
3. 반환대상자 관리 ····· 47
4. 반환의 절차 및 처리 방법 ····· 47

Ⅳ. 이의신청 ····· 48
1. 이의신청 접수 : 읍·면·동(교육청) ····· 48
2. 이의신청 이송 : 읍·면·동(시·군·구) → 학교(교육청) ····· 48
3. 이의신청 이송 : 학교(교육청) → 시·군·구 ····· 48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 49
5.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49

Ⅴ. 개인정보 보호 ····· 50
1. 개요 ····· 50
2. 조치사항 ····· 50

Ⅵ. 데이터 미이관자 정비 ····· 51

제6편 기타

Ⅰ. 보장기관 ····· 54

Ⅱ. 예산 부담 및 정산 ····· 55

Ⅲ. 교육급여 수급자 혜택 안내 ····· 60

제7편 서식

2017년 교육급여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주요 개정 사항

2016년 지침	2017년 지침	비고
〈p.4〉 ○ 3월 집중 신청 기간('16.3.2(수)~3.18(금)) 동안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교육급여에서 탈락해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p.4〉 ○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급여에서 탈락해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비 지원 불가능(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지침 명확화
〈p.5〉 ○ 통합신청 등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연령 미도래 등의 사유로 교육급여를 받지 않던 기초생활수급자가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직접 또는 유선 등의 방식으로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육급여 수급의사를 확인하거나 직권으로 보장 적합의견을 전송할 수 있음(학교에서 학적 여부를 확인하여 보장 결정)	〈p.5〉 ○ 통합신청 등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연령 미도래 등의 사유로 교육급여를 받지 않던 기초생활수급자가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직접 또는 유선 등의 방식으로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육급여 수급의사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장 적합의견을 전송할 수 있음(학교에서 학적 여부를 확인하여 보장 결정)	지침 명확화

2016년 지침	2017년 지침	비고
〈신설〉	〈p.19〉 ※ 교육급여 수급자가 '15.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전 구 보장기관인 시·군·구를 통해 보장 결정되었으나 급여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구 보장기관인 시·군·구에 수급자의 자격을 공문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수기 지급 및 근거 자료 별도 보관	**지침 명확화**
〈신설〉	〈p.21〉 ○ 지원 중지 : 장학상 학비감면자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 자격이 중지되는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수급자 계좌로 지급하던 학비는 사유발생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 중지	**지침 명확화**
〈p.22〉 ○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지원 대상 : 고등학생 – 지원 내용 : 1인당 131,300원 지급 (연 1회) – 지원 방법 : 학년 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 지원 – 이중지원 금지 : 지원받은 학년도의 교과서비는 재입학, 재취학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으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교과서경비를 92,100원 이상 지원 받은 경우에는 부교재비인 39,200원만 지원(단 92,100원 이하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131,300원과 지원받은 교과서 경비의 차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변경('10.7.5)되어 의무교육 대상인 특수교육 대상 고교생은 교과서대를 지원받으므로 부교재비만 지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p.22〉 ○ 교과서 – 지원 대상 : 고등학생 – 지원 내용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 '16년까지 일정금액('16년 기준 부교재비 포함 131,300원)을 지급하였으나, 수급자가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선납하는 경제적 부담 및 행정적 불편을 경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 방식 변경 – 지원 방법 :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배부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학년 초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수급자의 교과서대금을 일괄 지급 ※ 수급자가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전학 후 수급자가 되는 경우 전출교에 기 납부한 교과서대금을 전입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제도 개선사항 반영** 중앙생활보장원회 의결로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던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를 부교재비와 분리하여 학교로 지급하고,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2016년 지침	2017년 지침	비고
	– 유의사항 : 학교 별 교과서대금 징수 시 교육급여 수급자의 대금인출을 유예*하여 수급자가 교과서대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교육청의 교과서 대금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개인부담금과 지원금을 1,2차로 분할하여 정산 ※ 2월 말일 이전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해당연도 교과서대 징수 필요 – 이중지원 금지 ①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지원 받은 경우 재입학, 재취학, 전학하거나 위탁교육 등을 받더라도 지원하지 않음(단,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가 교과서 신청 후 수령하기 이전 전출 시, 학교에서는 배부 받은 교과서를 공급소에 반납하고 수급자에게 전입교에서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 ②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 등으로 교과서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지원 하지 않음 ③ 여러 학년에 필요한 교과서는 최초 1회만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변경('10.7.5)되어 의무교육대상인 특수교육 대상 고교생은 별도 지원받으므로 교과서를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p.22〉 ○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39,200원 지급(연 1회)	〈p.23〉 ○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41,200원 지급(연 1회)	**제도 개선사항 반영**

2016년 지침	2017년 지침	비고
〈p.24〉 가. 급여 지급 방법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은 수급자 전용계좌에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의 경우 학교로 직접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p.24〉 가. 급여 지급 방법 ○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수급자 전용계좌에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 경우 학교로 직접 지급 – 학교 별 교과서 배부시기에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제도 개선사항 반영**
〈p.25〉 ○ 매 월 16일 00:00에 급여 자료 자동 생성 – 초등학생 부교재비,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 고등학생 학용품비, 교과서대(부교재비포함), 입학금, 수업료	〈p.25〉 ○ 매 월 16일 00:00에 급여 자료 자동 생성 – 초등학생 부교재비,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 고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이 "0"으로 생성	**제도 개선사항 반영**
〈신설〉	〈p.25〉 ○ 지급이 필요한 교과서대금을 시스템에 입력 (16일~20일)	**제도 개선사항 반영**
〈p.25〉 ○ 한부모 학용품비 중복 지급 확인 – 교육급여 수급자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자격* 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교육급여를 우선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 담당과에서 학용품비(50,000원)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나(교육급여 우선 적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 자녀에게 연 5만원의 학용품비 지급 – 신규 보장 결정자가 시스템을 통해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한부모 학용품비(50,000원)가 이미 지급 되었는지를	〈p.25〉 ○ 한부모 학용품비 중복 지급 확인 – 교육급여 수급자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자격* 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교육급여를 우선 지원하고 시·군·구 한부모 가족 담당과에서 학용품비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나(교육급여 우선 적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 자녀에게 연 54,1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신규 수급자의 보장결정 이전*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였던 경우 해당 연도 학용품비 미지급(시·군·구 한부모 담당과에서 학용품비 지급)	**제도 개선사항 반영** 부처간 협의한 내용 반영

2016년 지침	2017년 지침	비고
확인하여 지급된 경우 2학기 학용품비 지급 시 차액 3,300원만 추가 지급(9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 추가 지급 없음)	* 신규 자격을 취득할 경우 먼저 자격을 결정한 기관에서 지급하고, 자격결정 시기가 같은 경우 교육급여에서 지급 – 단, 교육급여와 한부모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가 당해 연도 9월1일(3분기) 이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학용품비를 반액밖에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 안내하여 시·군·구에서 차액을 지원('17년 27,050원) – 수급자가 분할지급 등의 사유로 시·군·구에서 지원받기를 학교에 요구(별도 서식1호)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급여를 지원하도록 학교에서 시·군·구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교육급여에서는 학용품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단 관리	
〈신설〉	〈p.28〉 6)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징수 및 수납 : 학교 ○ 교육청에서 교부한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는 반드시 나이스–에듀파인 간 연계 받은 파일로만 징수 및 수납 처리	지침 명확화
〈신설〉	〈p.31〉 ○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수급자의 자격을 중지한 경우, 학교 담당자는 시·도교육청에 중지 취소 요청을 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중지 사유를 확인하여 중지 취소 가능	제도 개선사항 반영
〈신설〉	〈p.34〉 ○ 재학 중 신청하였으나 졸업 이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전송된 경우,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에 대상자 명단 및 지급액을 공문으로 송부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지급	지침 명확화
〈신설〉	〈p.37〉 (6)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가. 대상자 결정	기존 안내사항 반영

2016년 지침	2017년 지침	비고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의사상자 결정 및 대상자를 지자체(시·도 ⇒ 시·군·구) 담당과에 안내 나. 대상자 안내 ○ 시·군·구의 의사상자 담당과에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상자 본인 또는 자녀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다. 신청 접수 ○ 신청자*가 교육급여 신청서[별도서식 3호] 시·군·구의 의사상자 담당과에 제출하면, 해당과는 접수한 신청서와 함께 대상 학생의 지원 자격**을 명시하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에 공문 송부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대상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신청 가능 **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학생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사자의 자녀 또는 의상자와 그 자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어야 함 라. 급여 지급 ○ 시·도교육청은 시·군·구에서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 지급 마. 급여 중지 ○ 지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급여를 거부하거나, 졸업 등으로 급여 지급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지원 중지	
〈신설〉	〈p.136〉 ※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자와 수급자의 가족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제도 개선사항 반영

※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Ⅰ 제1편 Ⅰ

제도 개요



Ⅰ 교육급여 전체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동시 신청 안내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없음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이의신청		○ 시·군·구(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신청 또는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시·군·구에서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학교(교육청)에 이송 - 기타 이의신청의 경우 접수된 내용을 즉시 학교(교육청)에게 이송 ○ 교육청에서 접수하거나 학교(교육청)로 이송된 이의신청이 신청 또는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 조사를 시행한 시·군·구청에 신청서 접수나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은 즉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교육청)에 송부 ○ 학교(교육청)가 처분함

※ 본 안내 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1 기관별 역할

구 분	내 용
읍·면·동	○ 상담·신청 안내, 신청·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등 ○ 교육급여 신청서 접수 및 시·군·구 자료 이송 ○ 이의신청서 접수 및 자료 이송(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시·군·구, 기타 사항⇒학교(교육청)) ○ 교육급여 증명서 발급, 급여 계좌 변경 접수 등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교육급여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전송 *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일원화 ○ 소득재산조사 관련 이의신청 사항 재조사 및 통보 ○ 접수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소득 재조사 및 통보
학교	○ 보장 결정 및 통지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중복 지원 확인 등 급여액 관리 ○ 전출·입, 퇴학, 제적 등 학적 변동 관리 및 변동에 따른 급여액 관리 ○ 부당수급 의심자 보고 및 부당수급 결정에 따른 반환명령 등 관리 ○ 상담·신청 안내, 교육급여 관련 민원(이의신청) 처리 및 결과 통보 ○ 급여 계좌 변경 처리, 증명서 발급 등
교육청 (교육지원청)	○ 학교 행정 지원 및 교육급여 제도 운영 ○ 교육급여 예산 관리(국고 및 지자체 예산 신청, 정산, 반환 등 포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적 관리를 하지 않는 기관 수급자의 보장 결정 및 통지 ○ 각 학교(국립학교 포함)에서 생성된 교육급여 지급액 집행 ○ 상담·신청 안내, 교육급여 관련 민원(이의신청) 처리 지원 ○ 급여 계좌 변경 처리, 증명서 발급 등

* 이의신청 접수, 증명서 발급, 계좌번호 변경 신청은 수급(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처리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1) 신청 (읍·면·동)

가) 신청서 작성

○ 신청서(서식1호) :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처리기한, 본인신고의 의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정보조회의 동의 등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3호) : 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기타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보장기관은 신청접수 및 조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구비가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수급(권)자에게 요청하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용발급하여 활용하여야 함

나) 급여 신청 ※ 집중 신청 기간('17.3.2(목)~'17.3.24(금))

○ 동 제도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 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 수급권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음

- 이에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 자료 등록 시 정확하게 입력 필요

- 단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제출은 요청하지 않음

○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급여에서 탈락해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비 지원 불가능(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 통합신청 등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연령 미도래 등의 사유로 교육급여를 받지 않던 기초생활수급자가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직접 또는 유선 등의 방식으로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육급여 수급 의사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장 적합 의견을 전송할 수 있음(학교에서 학적여부를 확인하여 보장 결정)

다)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급여신청일 자동부여

2)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가) 접수 처리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부모의 부양의무자인 조부·모는 조사대상이 아님

나)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하거나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다)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주택조사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금융재산 조회결과 등을 적용하여 급여종류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결정

3)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학교, 교육청)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판정 결과(적합/부적합)를 기반으로, 학교에 자동으로 보장 결정 명단 생성(담당자에게 알림 기능 제공)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적 관리를 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 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쓰도록 권고 하되, 단기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기관의 학생들의 보장 결정 및 통지

– 읍·면·동은 신청 접수 시 학생의 학적이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학교(교육청)는 학생들을 보장 결정한 후 즉시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부적합)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신청 후 30일 이내]

○ 확정된 수급자 명단을 학교, 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

【2017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4) 급여 지급

○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학기가 시작되는 '17.3월부터 적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명당 41,2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급자 현금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4,100원	1,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배부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교과서대 징수 시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 인출 유보

○ 지급 절차

- (급여액 생성, 학교(교육청)) 보장 결정에 따른 급여 자료 생성 및 제출
  * 수급자가 타 사업을 통해 급여 항목을 기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단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차액 지원)
- (급여액 확정, 교육청 사업부서) 교육청은 생성된 급여액을 확인하여 해당 분기의 급여액을 확정하고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지출품의 후 회계부서로 지급 의뢰
- (급여 지급, 교육청 회계부서) 의뢰된 급여내역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 후 각 시·도교육청 금고를 통해 급여 입금
  * 보장결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에 소득재산변동으로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보장결정이 되었으므로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신청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1분기인 경우)은 지급하고 수업료는 급여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급여 중지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급(단 수급자가 급여 신청을 취소하거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급여 미지급)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시·군·구 급여 종류별 사업팀, 학교 교육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 신청을 대행하여,

-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재조사하여 결과를 15일 이내에 학교(교육청)에 이송하고
- 기타 사항인 경우 접수된 내용을 즉시 학교(교육청)에 이송하여 학교(교육청)가 처분

○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가 교육청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교육청은 이를 접수하여 처리

- 신청서 접수나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접수하여 조사를 시행한 시·군·구청에 신청서 접수나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은 즉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교육청)에게 송부

나. 기존 수급자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가) 소득·재산, 가구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해당 분기 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나) 학적변동(학교(교육청))

○ 학생의 전학, 퇴학 등 학적변동사항을 개별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자동으로 교육급여 시스템에 반영

2) 급여 지급 자료 생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조사자 결정정보(적합/부적합)에 따라 학교(교육청)에 수급자 명단이 변경(담당자에게 알림 기능 제공)

* 신청자의 집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서면통지 및 문자메세지 통보에 활용

○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 달 급여생성일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생성

- 계속 급여를 받고 있던 기존수급자의 경우, 교과서와 부교재비는 매 학년 초에, 학용품비는 매 학기 초(1/4분기, 3/4분기)에 일괄 지급하고,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1학년 1분기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 신규로 수급자가 된 경우, 보장 결정일이 매월 15일까지인 경우 해당 월에 자동으로 급여가 생성되고, 매월 16일부터 자격이 결정된 경우 다음 달에 급여가 생성

3) 급여액 확정 및 지급 (교육청)

○ 급여담당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확정 처리 및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를 지급

다.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학교(교육청))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알림

○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확인조사로 변경하여 실시

○ 입·퇴학, 전·입학 등 학적변동사항은 학교(교육청)가 처리

2) 급여중지 요청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선정기준(중위소득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 본인이 급여중지를 요청*한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학교(교육청)에 보장 중지 요청

* 수급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급여 중지를 신청한 경우 해당 학교(교육청)에 급여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공문을 근거로 급여 중지 처리

3) 급여중지 및 결정 (학교(교육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장 중지 요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달되면 담당자는 자격을 중지처리하고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자격이 중지 처리되면 다음 분기부터 자동으로 학비 지원 중지

※ 자격이 중지된 교육급여 기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고교 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입학금·수업료는 교육급여 사업에서 받고 있어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받고 있는 경우) 교육급여 지급이 중지된 때부터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해당 학년의 수업료 지원

○ 학비 지원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반납처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의 경우 정산 안함[법 47조]

4)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장 비용 징수 (학교(교육청))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교육급여 부정수급을 발견한 경우 학교(교육청)에 해당사항 통보

* 수급자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학교(교육청)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 부정수급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 입학금 : 정산하지 않음 [법 제47조]
- 수업료 : 자격중지일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기산하여 기지원금이 있는 경우 환수

* 신청 시부터 부정수급이었던 경우는 전액 환수

Ⅰ 제2편 Ⅰ

신청 및 선정기준

신청 및 소득·재산조사 업무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군·구(읍·면·동)에 위임됨에 따라,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제3편 조사는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p.23~p.206을 참조



Ⅰ 제3편 Ⅰ

조 사

신청 및 소득·재산조사 업무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군·구(읍·면·동)에 위임됨에 따라,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제3편 조사는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p.23~p.206을 참조



Ⅰ 제4편 Ⅰ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목적 및 기본원칙

가. 교육급여의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나. 교육급여의 기본 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3)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4)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2 급여의 보호 등

가. 급여의 보호

○ 급여변경의 금지[법 제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압류금지[법 제35조]

(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나)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나. 수급자의 의무

※ [법 제37조]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이 변동되거나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보장기관이나, 소득·재산조사사항이 지자체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소득·재산조사 관련 변경 내용은 시·군·구로 신고해야 함

※ [법 제22조제1항] (신청에 의한 조사)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로 부양의무자에 관련된 내용은 신고할 필요 없음

다. 수급권의 양도금지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법 제36조]

3 급여의 결정

가. 급여의 결정 [법 제26조]

○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전달되면, 학교(교육청*)는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즉시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제1항]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쓰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수급권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이 보장결정 및 통지하되, 해당 기관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적관리를 사용하여 직접 교육급여 수급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

- 읍·면·동은 신청 접수 시 학생의 학적이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판정 결과(적합/부적합)를 기반으로, 학교(교육청)에 대상자 명단 생성

- 대상자가 해당 학교의 학적에 있는 경우 자동으로 "교육급여 보장 대상자 명단"이 생성되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소득·재산조사 판정 결과(적합/부적합)는 학교(교육청)에서 변경할 수 없음(전국 단일 기준)

○ 학교(교육청)는 보장 대상자의 학적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보장 결정

- 확정된 수급자 명단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저장

* 고등학생의 경우 보장 결정이 된 때부터 입학금·수업료가 학교로 납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수급자의 편의 도모

○ 대상자가 학적에 없거나, 퇴학, 제적, 졸업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는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장 부적합 결정하고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함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법 제26조제3항, 제4항]

1) 통지 방법

○ 학교(교육청)는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하여야 함
  ※ 반드시 시·도교육감의 명의로 통지해야 함
- 급여 신청 시 문자 발송을 희망한 자에 한해 문자 메시지 통보

[교육급여 문자통보 문안]

> ○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적합 결정 시 : 홍길동 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00 고등학교
> ○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부적합 결정 시 : 홍길동 학생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00 고등학교

2) 통지기일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시·군·구에 신고[법 제22조]
  ※ 수급자의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시·도 교육감의 위임에 의하여 시·군·구의 소관사항에 해당

○ 이에 수급자가 성실신고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감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었던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 급여로 소급 지급할 수 없음

○ 이외, 보장기관이 공적자료 적용을 통보된 정보와 달리 적용하거나, 성실 신고하였음에도 반영을 누락하는 등 제도 운영을 법령 및 지침과 달리하여 적용하여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음

※ 「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교육급여 수급자가 '15.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전 구 보장기관인 시·군·구를 통해 보장 결정되었으나 급여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구 보장기관인 시·군·구에 수급자의 자격을 공문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수기 지급 및 근거자료 별도 보관

5 교육급여 내용 및 지원 기준

가. 지원대상자

○ 기초법 시행령 제 16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기초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법 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제6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학비(입학금·수업료) 지원 제외 (「기초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 불가

○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 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수급자 계좌로 지급 가능

- 근거 : 기초법 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

> **기초법 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 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 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시·도별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학비를 면제·감면 받는 ① 성적 우수자 ② 시·도 특별장학생 ③ 체육 등 특기생

- 선정 절차 : 교육감이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선발하거나, 학교장이 선정한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위원회에 준하는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대상자 결정(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

  * 체육특기자, 시·도 특별장학생 선정을 위해 기 구성된 위원회로 대체 가능

  ※ 학비 감면자에 대한 학비지급기준 : 해당학교소재지의 급지별 학비기준

- 지원 중지 : 장학상 학비감면자의 생계의료수급 자격이 중지되는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수급자 계좌로 지급하던 학비는 사유발생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 중지

다.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라. 급여 항목 별 주요 내용 (학기가 시작되는 '17.3월*부터 적용)

* 교과서는 '17.1~2월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배부

○ 입학금·수업료

- 지원대상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입학금·수업료 지급

- 지원내용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1학년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입학금은 수급자가 최초 입학 시 1회만 지급하는 것으로, 재학 중 자퇴 등의 사유로 재입학 하는 경우라도 입학금은 동일한 수급자에게 2회 지급하지 않음
    – 학교에서는 재입학하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의 경우 이전학교에서 입학금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수혜 방지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예시) 8월에 신청하여 9월에 수급 결정 및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청은 학교로 8~11월 수업료를 지급하고, 학교는 8월 학비를 수급자에게 환급 (수급자가 8월 학비를 기 납부한 경우)

○ 교과서

- 지원 대상 : 고등학생
- 지원 내용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16년까지 일정금액('16년 기준 부교재비 포함 131,300원)을 지급하였으나, 수급자가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선납하는 경제적 부담 및 행정적 불편을 경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 방식 변경

〈교육급여 수급자 고교 교과서대 지급 방식 변경 흐름도〉



- 지원 방법 :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지급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학년 초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수급자의 교과서 대금을 일괄 지급

※ 수급자가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전학 후 수급자가 되는 경우 전출교에 기 납부한 교과서대금을 전입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유의사항 : 학교 별 교과서대금 징수 시 교육급여 수급자의 대금인출을 유예*하여 수급자가 교과서대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교육청의 교과서 대금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개인부담금과 지원금을 1,2차로 분할하여 정산

※ 2월 말일 이전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해당연도 교과서대 징수 필요

- 이중지원 금지

①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지원 받은 경우 재입학, 재취학, 전학하거나 위탁교육 등을 받더라도 지원하지 않음(단,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가 교과서 신청 후 수령하기 이전 전출 시, 학교에서는 배부 받은 교과서를 공급소에 반납하고 수급자에게 전입교에서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

②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 등으로 교과서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음

③ 여러 학년에 필요한 교과서는 최초 1회만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변경('10.7.5)되어 의무교육대상인 특수교육 대상 고교생은 별도 지원받으므로 교과서를 지원하지 않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3조)

○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41,200원** 지급(연 1회)
- 지원방법 : 학년 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차기 학비지원 시기에 전액 지급

○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54,100원** 지급
- 1학기(1/4분기), 2학기(3/4분기) 2회에 거쳐 **27,050원**씩 지급

- 지원방법 :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1/4분기, 2/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최초 지급 시와 3/4분기 지급 시)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3/4분기, 4/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최초 교육급여 지급 시) 지급

  * 1/4분기(3~5월), 2/4분기(6~8월), 3/4분기(9~11월), 4/4분기(12~2월)

  ※ 4/4분기에 속하는 1~2월에 신규 급여 신청자의 경우에도 2학기 학용품비 지급 대상임

[학교 급별 지원내역]

구분 \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41,200	–	–	–
중 학 생	41,200	54,100	–	–
고등학생	41,200	54,1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 2회 (1/4, 3/4분기)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Ⅱ 급여의 지급

1 급여 지급 절차

가. 급여 지급 방법

○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수급자 전용계좌에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 경우 학교로 직접 지급

- 학교 별 교과서 배부시기에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나. 절차별 처리 내용

1) 변동 관리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인 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등을 확인하고 매월 15일까지 변동자료 반영

2) 중복 지원 방지

○ 고등학교 교육급여 담당자는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이미 면제 또는 지원받았는지를 확인(단,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차액 지원)

○ 학비 지원 우선 순위 검토

- 법정 면제(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교육급여보다 우선하여 적용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법령에 의해 교육급여와의 중복 지원을 제한하지 않는 법정지원의 경우 교육급여보다 우선 적용

- 한부모, 장애인,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법에 교육급여를 받으면 지원을 중단하도록 명시한 법정지원의 경우 보장내역이 더 큰 교육급여를 우선 적용*하되

* 교육급여를 지급한 이후 해당 사업 기관이 학비를 보내온 경우 해당 사업 기관에 반납 처리

- 교육급여 '자격 결정' 시에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해당 분기의 학비가 지원* 또는 감면된 경우 교육급여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 지원기관이 공문으로 학비 지원을 확정한 경우 포함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 법정 지원이 아니므로 교육급여가 우선 적용 (특성화고 지침에 따라 중복 지원 제한)
  * 교육급여 학비 지원과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특성화고 장학금 반납 처리

○ 교육급여 수급자가 장애인 학비 지원 대상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교육급여를 우선 지원하고 시·군·구의 장애인 학비 지원 담당과에서 급여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나,

- 신규보장 결정자가 장애인 학비 지원 대상자(명단 별도 안내)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가 이미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급여 지급(입학금, 수업료는 학교에서 중복 확인)
  * 장애인 학비 지원 사업은 '16년부터 신규 수급자 보장 결정을 중단하는 등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

○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급여 지급 시기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의 학적 및 고등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 급여 지급 요청액*을 공문으로 확인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다른 사유로 지원 또는 면제받은 경우, 해당 학교는 그 차액을 시·도교육청에 요청

3) 급여 자료 생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매 월 **16일 00:00**에 급여 자료 자동 생성

- 초등학생 부교재비,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 고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이 "0"으로 생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급여

○ 지급이 필요한 교과서대금을 시스템에 입력 (16일~20일)

○ 한부모 학용품비 중복 지급 확인

- 교육급여 수급자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교육급여를 우선 지원하고 시·군·구 한부모 가족 담당과에서 학용품비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나(교육급여 우선 적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 자녀에게 연 54,1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신규 수급자의 보장결정 이전*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였던 경우 해당 연도 학용품비 미지급(시·군·구 한부모 담당과에서 학용품비 지급)

  * 신규 자격을 취득할 경우 먼저 자격을 결정한 기관에서 지급하고, 자격결정시기가 같은 경우 교육급여에서 지급

- 단, 교육급여와 한부모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가 당해 연도 9월1일(3분기) 이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학용품비를 반액 밖에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 안내하여 시·군·구에서 차액을 지원('17년 27,050원)

- 수급자가 분할지급 등의 사유로 시·군·구에서 지원받기를 학교에 요구(별도서식 1호)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급여를 지원하도록 학교에서 시·군·구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교육급여에서는 학용품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단 관리

○ 고교 입학금·수업료 예산 부담 주체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고등학생 수급자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중위소득 40%미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수급 여부 확인

  * 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2에 따라 학생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40%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되, 입학금·수업료의 지원 또는 감면을 선택 가능

[입학금·수업료 예산 집행 방법(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예산부담주체	집행 방법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0%미만,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국가, 시·도, 시·군·구	학교에 직접 지급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중위소득 40%~50%, 또는 중위소득 4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시·도교육청	학교에 직접 지급 or 감면(사립의 경우 차액은 재정결함보조로 지원)

4) 급여 확정 : 교육청 사업부서

○ 교육청은 생성된 급여액을 마감하여 해당 분기의 급여 대상 명단 및 급여액 확정

- 교육지원청 : 초등학생 부교재비,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 시·도교육청 : 고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급여

○ 지방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지출품의 후 회계부서로 지급 의뢰※ 보장결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에 수급자가 전학하는 경우, 급여 생성일(16일 00시) 기준 학적이 있는 기관에서 급여 자료 생성

5) 급여 지급 : 교육청(회계 부서)

○ 의뢰된 급여내역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 후 각 시·도교육청 금고를 통해 급여 입금

○ 지급일 : 23~25일 중 (휴일 등에 따라 지급일 조정 가능)

- 보장결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에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보장결정이 되었으므로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신청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1분기인 경우)은 지급하고 수업료는 수급권을 상실한 사유에 따라 지급

※ 학업 중단에 따른 수급권 상실 : 급여 신청일부터 중지일까지 지급

※ 졸업에 따른 수급권 상실 : 졸업한 월까지 지급

※ 소득인정액 증가에 따른 수급권 상실 :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 중지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급(단 수급자가 급여 신청을 취소하거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급여 미지급)

> 예시1) 고등학생 1학년이 3월에 급여를 신청하고 4월에 보장 결정되었으나 5월에 퇴학한 경우, 6월 급여 지급 시에 부교재비, 교과서대, 학용품비(반년치), 입학금, 수업료(3월~5월 치) 지급
>
> 예시2) 고등학생 1학년이 3월에 급여를 신청하고 4월에 보장 결정되었으나 그 후 신청 취소 또는 급여 정지를 요청한 경우, 급여 미지급

- 과·오지급액 수정 및 지급 오류 처리 등으로 급여액이 생성되는 것을 특정 날짜로 확정하여 업무의 편의 도모

〈대상별 입력 시기 및 생성일〉

구분	입력시기	생성일
지급액 생성	전달 16일 ~ 금월 15일	16일 00시
과오지급 수정금액 생성	전달 21일 ~ 금월 20일	20일
지급오류처리 생성	금월 1일 ~ 금월 말일	말일 (12월은 25일)

6)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징수 및 수납 : 학교

○ 교육청에서 교부한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는 반드시 나이스-에듀파인 간 연계 받은 파일로만 징수 및 수납 처리

※ (참고) 교육급여 교과서 지원을 위한 학교 업무 흐름도

업무구분	시기	업무내용
교과서 배부	1~2월 (학교 상황에 따라)	교과서 배부(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
징수결의 및 수납	2~3월 (학교 상황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 인출 유보 및 지원금 미납 처리
교육급여 교과서대금 생성 및 교부	3.16. 00시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이 0원으로 생성
	3.16.~3.20.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한 교과서대금 입력
	3.23.~3.25.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을 학교로 지급
교과서 대금 지급	3월 말 ~ 4월 (학교 상황에 따라)	교과서 공급소에 교과서대금 지급

다. 지급 시기

○ 기존수급자 : 분기별 지급

해당 분기	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급여지급시기	3월	6월	9월	12월
급여항목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1학년)	수업료	수업료	수업료

○ 새로 보장 결정된 수급자도 분기 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별 상황에 따라 보장 결정 후 첫 급여를 월별 지급 가능

- 매월 15일 이전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해당 월에 지급액이 생성되고, 16일 이후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다음 달에 지급액이 생성

(예시)

① 초등학생 A는 4월에 신청, 고등학교 1학년 B는 5월에 신청하여 6월 14일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지급 시기	6월	9월	12월
초등학생 A	부교재비 41,200원		
고등학생 B	부교재비 41,200원 학용품비 27,050원 교과서대(실비) 수업료(2/4분기) * 입학금 및 5월 수업료 포함	학용품비 27,050원 수업료(3/4분기)	수업료(4/4분기)

② 중학생C와 고등학교 1학년 D가 6월에 신청하여 7월 20일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 8월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 시기	8월	9월	12월
중학생 C	부교재비 41,200원 학용품비 27,050원	학용품비 27,050원	
고등학생 D	부교재비 41,200원 학용품비 27,050원 교과서대(실비) 수업료 (6,7,8월)	학용품비 27,050원 수업료(3/4분기)	수업료(4/4분기)

–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시기	9월	12월
중학생 C	부교재비 41,200원 학용품비 27,050원 학용품비 27,050원	
고등학생 D	부교재비 41,200원 학용품비 27,050원 학용품비 27,050원 교과서대(실비) 수업료(3/4분기) * 6~8월 수업료 포함	수업료(4/4분기)

2 급여의 중지

가. 중지 사유

(1)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

(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을 초과한 때

(나) 교육급여 대상자의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음을 확인한 경우

* 교육급여 수급자의 사망 등

(2)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때'

(가)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나) 기타 보장기관이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로 확인한 경우

나. 중지 시기

○ (일반)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교육급여수급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급여 지급 중지

* 수급자증명서는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부터 발급 불가

○ (학적 변동) 교육급여대상자가 자퇴, 퇴학, 휴학, 제적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교육급여 수급 자격 정지 및 급여 지급 중지

* 수급자의 사망으로 학교에서 제적 처리된 경우 학적 변동에 포함되어 일할 계산

다. 중지 절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

- 졸업 또는 학업중단으로 인해 자격 중지를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안내(참고, p.184)를 동봉하여 송부(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략 가능)

【급여 변경·중지 절차】

조 사	변경·중지 요청	변경·중지결정 및 등록	통지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학교(교육청))	학교(교육청)

○ 수급자가 읍·면·동(시·군·구)에 급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 읍·면·동(시·군·구)에서 학교로 공문을 송부하여 급여 중지를 요청하고, 학교에서 급여 중지(교육행정정보시스템 미사용교 재학생인 경우 읍·면·동(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송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급여 중지)

- 성인(19세 이상)인 수급권자와 수급권자의 가구원이 학교로 직접 수급권자의 급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별도서식 1호] 학교에서 급여 중지

○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수급자의 자격을 중지한 경우, 학교 담당자는 시·도교육청에 중지 취소 요청을 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중지 사유를 확인하여 중지 취소 가능

라. 자격 중지 시 정산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

- 중지일 이전의 급여지급액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법 제47조]

○ 수업료

- (일반)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분기부터 교육급여지원을 중지
- (학적변동)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교육청으로 반납 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고교 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입학금·수업료는 교육급여 사업에서 받고 있어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학교운영지원비만 감면 받고 있는 경우) 교육급여가 중지된 때부터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해당 학년의 수업료 지원
  * 졸업으로 교육급여가 중지된 경우, 졸업한 달까지 월할 계산

마. 수급권자가 급여 신청을 취소한 경우 반영 방법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자결정정보 전송 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신청 접수 삭제

○ 조사자결정정보 전송 후 보장결정 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신청 접수 삭제 및 교육부에 신청취소요청 전달(공문) → 신청 취소 결정 및 명단 삭제

○ 보장결정(통지) 후 급여 지급 명단 확정 전 : 급여 지급 중지

○ 급여 지급 후 : 급여 중지 요청으로 처리하여 다음 분기부터 급여 지급 중지

바. 교육급여 신청일, 중지일 오기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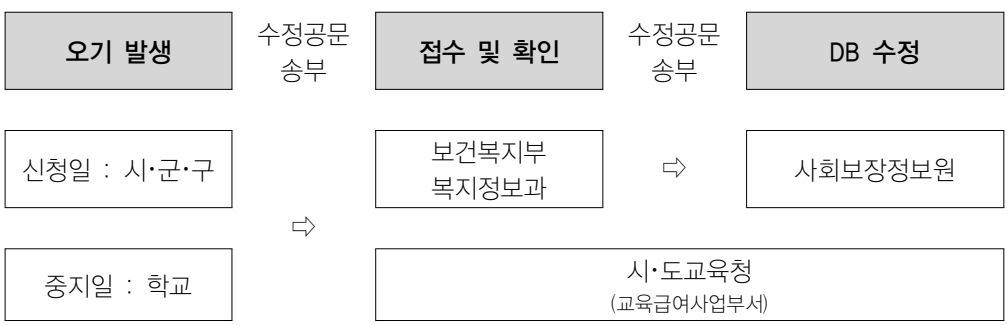
○ 신청일 수정 :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와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가 위치한 시·도교육청에 오기 입력 변경요청 공문을 동시에 송부하면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수급권자의 교육급여 오기내역을 수정하고
- 교육청은 교육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일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환수액 또는 추가지급액 지급 결과를 나이스에 입력(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의 환수 처리는 지방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처리)

○ 중지일 수정 : 학교에서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와 해당 학교가 소속된 시·도교육청에 오기 입력 변경요청 공문을 동시에 송부하면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수급권자의 교육급여 오기내역을 수정하고
- 교육청은 교육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중지일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환수액 또는 추가지급액 지급 결과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의 환수 처리는 지방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처리)

【오기 수정 흐름도】



3 전·입학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관리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 입학금

- 급여자료 생성일 기준 학적이 있는 기관에서 지급
- 보장기관 변경으로 인한 정산은 실시하지 않음

○ 수업료

- 급여자료 생성일 기준으로 학적이 있는 기관에서 지급

[전출입, 학적 변동에 따른 지원 방법]

구 분	지원방법	세부 내용
전출입	월할계산	전출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전입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 * 수업료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 (예시) 4월 전출, 6월 전입 시 6월부터 전입교에서 지원 * 시스템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9월 전출, 8월 전입 시 전출교는 8월까지, 전입교는 9월부터 지급
재입학, 편입학	일할계산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지원
휴학 후 복학	일할계산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지원

* 학비가 다른 학교 간 전학 시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는 경우, 시스템으로는 월할 계산하고, 나머지는 학교 간에 별도 정산

*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로 전출입하는 경우 나이스 전출, 전입일을 기준으로 계산

  – 일할계산 방식 : 재학한 월의 수업료와 함께, 학적변동이 일어난 월의 수업료에서 반환금액을 제외하고 징수 (다수 시·도교육청의 세입업무편람 방식)

※ 예시) 3/4분기 징수결정 후 10. 8. 자퇴 및 퇴학 시
  – 9월분 : 99,000원 전액 징수
  – 10월분 : 자퇴·퇴학일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반환 : 99,000원 × 23일/31일 = 73,451원 ➪ 73,450원(10원단위 절사))
    (징수 : 99,000원 – 반환금액 = 25,550원)
  – 11월분 : 99,000원 전액 반환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일할계산결과가 해당지역의 계산방식과 맞지 않는 경우 수업료+/– 기능을 활용하여 금액 조정

4 상급학교 진학 시 급여 지급

○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1~2월 보장 결정된 수급자의 경우, 보장 결정 당시 학적이 있는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

- 보장 결정 없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상급학교에 학적이 형성된 경우, 상급학교에서 보장 결정하고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학적이 정비되기 이전이라도 입학금·수업료를 미리 감면하여 수급자의 편의 도모

○ 재학 중 신청하였으나 졸업 이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전송된 경우,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에 대상자 명단 및 지급액을 공문으로 송부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지급

5 계좌관리

가. 급여계좌 원칙

○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은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학교로 지급

나. 급여계좌 예외 [시행령 제6조 관련]

○ 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지급함

(1) 수급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성년후견제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수급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등)

※ '13.7월「민법」개정으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 수정

(2) 수급자로서 급여를 계좌로 입금할 경우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 (종전의 신용불량자)

※ 상기의 경우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토록 안내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1), (2), (3)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시행령 제6조]

(4) 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다른 급여가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하는 경우 해당 계좌 사용 가능

○ (1), (2), (3)의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기초생활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가) 급여 지급대상자인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상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대리 설정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수급자 명의 확인방법

○ 교육청 금고를 통해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사전점검 후 이체

라. 계좌 관리 절차

○ 급여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정보 및 계좌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연계

- 교육급여 보장 적합 결정이 되었으나 급여를 지급할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보장 결정 통지 시 교육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별도서식 2호)를 동봉 송부하고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

> 문자 안내 예시 : 안녕하십니까? 00학교 교육급여 담당자입니다. 00학생이 교육급여 보장 결정이 되었으나 급여를 지급할 계좌번호가 없어 급여 계좌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00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15일까지 급여 계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스쿨뱅킹이나 CMS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 매달 15일(지급명단 생성일)까지 계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쿨뱅킹이나 CMS계좌*로 급여 지급

  * 초·중·고 교육비 자동이체 계좌로 주로 입학 시에 학교에 제출

- 학교에 등록된 계좌가 학생의 가구원의 계좌가 아닌 경우,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게 급여 계좌를 신규 신청하도록 안내

○ 계좌 변경의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교육청)에서 변경(별도서식2호)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계좌번호 변경*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연계 가능

* 수급자가 읍·면·동에 계좌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읍·면·동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계좌 변경 반영 여부 바로 확인 가능

  – 매 분기 급여 생성일 이틀 전(분기별 13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당 분기에 변경 계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 분기에 반영

마. 압류 방지 전용 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개설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시 보장기관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수급(권)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6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가. 대상자 결정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의사상자 결정 및 대상자를 지자체(시·도 ⇒ 시·군·구) 담당과에 안내

나. 대상자 안내

○ 시·군·구의 의사상자 담당과에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상자 본인 또는 자녀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다. 신청 접수

○ 신청자*가 교육급여 신청서[별도서식3호] 시·군·구의 의사상자 담당과에 제출하면, 해당과는 접수한 신청서와 함께 대상 학생의 지원 자격**을 명시하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에 공문 송부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대상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신청 가능

**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학생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의사자의 자녀 또는 의상자와 그 자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어야 함

라. 급여 지급

○ 시·도교육청은 시·군·구에서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 지급

마. 급여 중지

○ 지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급여를 거부하거나, 졸업 등으로 급여 지급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지원 중지

| 제5편 |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 증명서 발급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40조]

- 발급대상 : 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그 친권자, 후견인 등
  ※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가정폭력, 성폭력 등),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사생활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외 제3자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제한
  ※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등은 위임장(서식12호)을 작성하여 신청
- 신청절차 : 복합 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국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시·군·구청장 직인이 날인되어 발급
  ※ 다수의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직인은 기준이 낮은 급여를 담당하는 보장기관의 직인 날인
-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가 수급자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의 직인이 날인되며 학교(교육청) 발행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도 발급(FAX민원)

유의사항

○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서식12호) 제출
-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학교(교육청)에 신청하는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자와 수급자의 가족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처리기간 : 즉시발급, 타거주지에서 신청 시 해당 보장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비용 : 무료
- 발급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출력(서식10호)
  ※ 민원 24, 홈에듀에서도 발급 가능

Ⅱ 보장비용의 징수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법 제46조제2항]

가. 부정수급의 확인

1) 부정수급의 정의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
- 따라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수급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기 신고 된 자료의 변동(임금의 인상, 재산의 가액증가 등 단순변동을 의미)을 제외한

-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신고의 의무 미이행) 및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됨
  ※ 신고한 소득과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소득이 상이하여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업종,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재산 증감(이자, 기존 예금의 평가액 변동은 제외) 발생한 경우, 소득환산대상인 재산의 취득은 신고대상임

2) 부정수급의 확인기관

○ 생계·의료·주거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었을 때 해당 수급자가 교육급여도 수급하고 있다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학교(교육청)에 시·군·구청에서 확인한 부정수급 기간, 내용, 대상자 등을 통보

-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학교(교육청)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부정수급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고, 재조사를 거쳐 확인된 부정수급 내용, 기간, 대상자 등은 학교(교육청)에 통보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명단 및 징수 필요 금액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타 급여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가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타 급여의 보장 비용 징수 제외가 결정된 경우,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학교(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고 학교(교육청)는 이를 반영하여 교육급여의 보장 비용 징수 제외 가능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1)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시행령 제41조]

가) 징수기간 산정기준

(1) 보장중지

○ (기초생활보장급여 원칙) 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수급 중지사유 발생 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중지사실을 안 때(조회시점 등이 속한 달)부터 기산

○ 교육급여의 경우,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기산하여 징수

나) 징수금액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 : 정산하지 않음* [법 제47조]

* 신청 시부터 부정수급인 경우 전액 환수

○ 수업료 : 자격중지일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하고 기지원금이 있을 경우 징수

* 교육급여 기 수급자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고교 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수급자가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때부터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해당 학년의 수업료를 지원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예시1) 수급자가 7월에 신규 취업하여 추가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함에도 신고를 누락하다가 당해 연도 10월 확인된 경우
- 선정기준초과 : 7월(당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 보장비용 징수기간 : 9월~11월(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분기부터)
- 급여중지 : 12월부터 급여 중지
- 보장비용 징수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은 정산하지 않음, 9월~11월 수업료 징수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고교 학비지원대상자인 경우 9월부터 해당 사업에서 수업료 지원

예시2) 수급자의 소득재산이 늘어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것이 10월 확인된 경우(소득재산 증가 월 확인 불가)
- 선정기준초과 : 10월(당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 급여중지 : 12월부터 급여 중지
- 보장 비용 징수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은 정산하지 않음, 수업료 11월까지 지급(징수 내역 없음)

2) 징수 대상자 관리

○ 학교(교육청)는 보장 비용 징수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다. 보장비용의 징수 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 보장기관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함

-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서식7호) 및 고지서를(등기우편 등) 송부

○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및 전출 시에는 보장비용납부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3) 독촉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24조~제88조) 참조

라. 징수금액의 처리

○ 징수한 보장비용을 징수 당해연도 급여분과 지난해 급여분으로 구분하여

- 당해 연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
- 지난해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시·도교육청의 그외수입으로 처리

2 결손처분

(1) 보장기관은 「지방세기본법」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부족한 때

(나) 보장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서 국가의 권리로서 소멸시효는 5년

(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등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발생한 때

(라)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단,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함

3 소급지급

○ 보장기관의 급여결정대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지급은 불가

- 단, 보장기관에서 급여 결정된 사항과 달리 과소 지급한 경우는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기에 소급지급 가능하며, 반대로 급여 결정된 사항보다 과다 지급된 경우는 반환명령 대상임(수급자 동의 시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 처리 가능)

4 소멸시효

○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관련법 : 「국가 재정법」 제96조
- 보장비용징수 적용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민사상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적용대상 : 수급자 적용, 부양의무자 미적용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소송비용과 기대이득의 비교 필요

5 고발조치

○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자는 [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

-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Ⅲ 반환명령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 [법 제47조]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및 일부

- 일부의 반환은 반환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반환명령이 부정수급과 다른 점은 그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있지 않고 보장기관의 행정 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보장비용 징수와 반환명령의 구분 예시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수급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등에 따라 수급자에게 기 지급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것을 결정하는 것

◦ 반환명령 : 수급자가 월 80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급여변경을 하지 않고 과거에 제출한 월 60만원의 소득을 계속해서 반영하여 와서 차후에 이를 보정·반영하여 급여변경을 결정하고 과잉지급 된 급여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결정하는 것

2 반환의 감면 (감액 또는 면제)

○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또는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3 반환대상자 관리

○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시·도교육청에 통보

○ 시·도교육감은 반환대상자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징수유형 구분 : 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② 반환명령
- 수급자 동의 시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 처리 가능

4 반환의 절차 및 처리 방법

① 과잉지급분 발생	○ 이미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
② 반환 결정	○ 반환명령 대상 과지급 급여액과 징수계획 결정, 결재를 득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징수대상자관리 반환대상자 등록 ○ 반환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확인
③ 반환 통지	○ 반환 결정 즉시(3일 이내) 통지(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 처리 가능) ⇨ 반환거부 (1차)
④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납부를 독촉 ⇨ 반환거부 (2차)
⑤ 체납처분	○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압류 : 반환대상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경매처분 : 보장기관의 장이 압류한 반환대상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
⑥ 반환금액 처리	○ 당해 연도 급여분 : 당해 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 ○ 전년도 급여분 : 시·도교육청 그외수입으로 처리

Ⅳ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접수 : 읍·면·동(교육청)

○ 구두나 서면으로 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 또는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부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서식8호]

*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육급여 보장기관인 시·도 교육감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낙인감 방지 및 접근성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 접수를 대행함

○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가 교육급여에 대하여 **교육청**에 직접 이의신청하는 경우, **교육청**은 해당 이의신청 접수 (타 급여 이의신청 접수 불가)

* 읍·면·동(시·군·구)에서 접수받은 서류 중 기타 이의신청 관련 서류는 학교(교육청)에 전달

* 교육청에서 접수받은 서류 전체를 시·군·구에 전달

2 이의신청 이송 : 읍·면·동(시·군·구) → 학교(교육청)

○ 교육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의 보장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교육급여 신청서 기재사항,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학교(교육청)에 송부하고
- 기타 이의신청사항은 즉시 학교(교육청)에 송부
- 단, 이의신청서를 학교(교육청)에 송부한 이후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에는 취하서를 즉시 송부

3 이의신청 이송 : 학교(교육청) → 시·군·구

○ 교육청이 접수하거나 읍·면·동(시·군·구)에서 이관 받은 이의신청이 신청서 접수나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조사를 시행한 시·군·구청에 신청서 접수나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은 즉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교육청)에게 송부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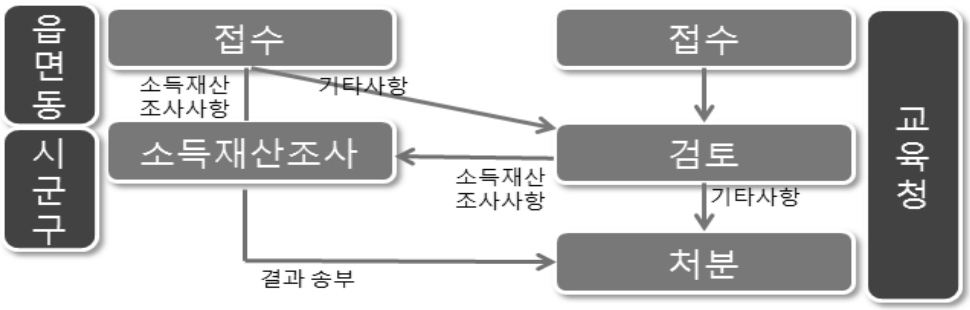
○ 학교(교육청)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제43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서식9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인에게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림

[이의신청 흐름도]



5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시·도교육감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송부

Ⅴ 개인정보 보호

1 개요

○ 교육급여 지원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 필요

○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2 조치사항

○ 교직원 연수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 고교 학비 고지서 발급은 가정통신문 안내로 대체

○ 업무관련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최고 파면에 처해질 수 있음
- 학부모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 학생에게는 정보 제공 금지
- 교육급여 지원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교직원(담임교사 포함)의 단순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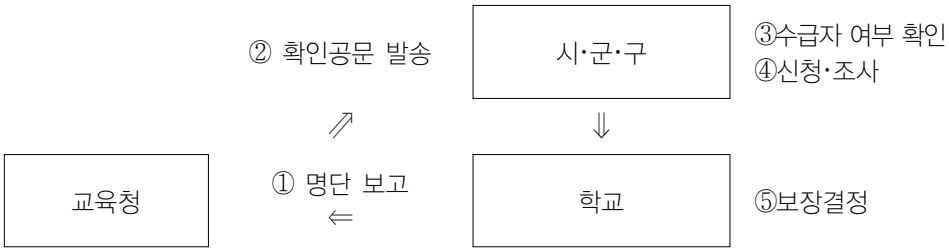
  ※ 단, 학교장 추천 지원, 장학금 추천, 학생 생활지도 등 필요한 경우 학교장 승인 후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열람 가능

Ⅵ 데이터 미이관자 정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예상되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학생이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발견되는 경우,

- (시·도교육청) 해당 학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및 수급자인 경우 교육급여 신청 처리 요청 공문 발송
- (시·군·구) 시·도교육청에 해당 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해 주고, 수급자인 경우 교육급여 신청·조사 절차 진행
- (학교) 해당 수급자가 신규 보장결정관리에 나타난 경우, 보장결정 후 기지급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지급

〈수기 관리 교육급여 수급자 정비 흐름〉



Ⅰ 제6편 Ⅰ

기 타



Ⅰ 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를 실시하는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임

○ 교육급여는 수급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실시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교육급여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수급자 범위의 특례, 지역자활센터 지정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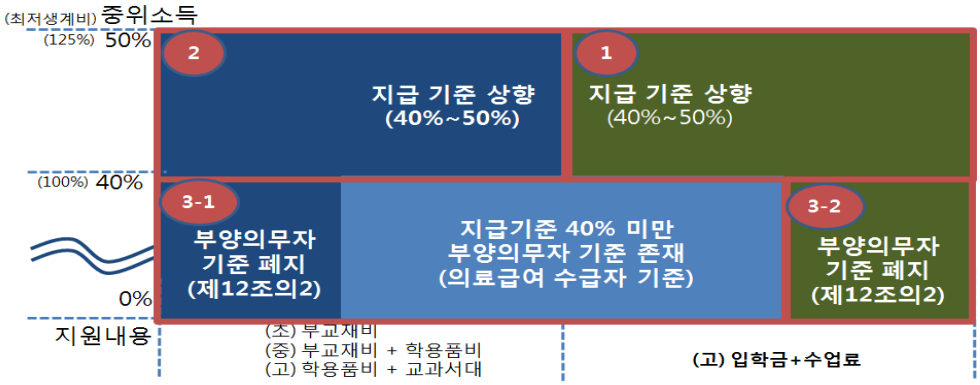
- 교육급여의 지급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Ⅱ 예산 부담 및 정산

○ 항목별 예산부담주체[기초법 제43조의2]

> **기초법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 (1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50% 이하 및 (3호 하반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인 경우 법 제12조의 2(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의 입학금·수업료의 지급은 시·도교육청**이 담당
- (2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50% 이하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분담
- (3호 상반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분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늘어난 입학금 ·수업료 제외)



* 고교 입학금, 수업료의 예산분담주체를 구별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수급자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인지 확인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국가, 시·도, 시·군·구가 입학금·수업료 부담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시·도교육청이 입학금·수업료 부담

기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중위소득 40% 이상~50% 이하		시·도교육청	국가, 시·도, 시·군·구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 있음	시·도교육청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국가, 시·도, 시·군·구	

○ 보장 비용 부담 비율[기초법 제43조]

기초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 타 급여의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부담비율에 준하여 교육급여 예산 반영

[2017년도 지자체별 국고지원율]

구 분	국고지원율	기초 지자체 현황
서울시 (25개)	60%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개 자치단체
광역시 (44개)	90%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진구, 해운대구 (대구)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중구 44개 자치단체
기타 시·군 (159개)	90%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경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경남)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창원시 (경북) 경산시, 칠곡군, 포항시 (부산) 기장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충남) 논산시, 천안시 (충북) 청주시 37개 자치단체
	80%	기타 122개 시·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성남시, 평택시, 제주 및 세종자치시 등 포함)

○ 보장 비용 부담 수급자 기준

- 해당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법 제 19조(보장기관)의 시·도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바, 학생의 실 주소지에 상관없이 학생이 교육을 받는 학교의 위치에 따라 관할을 하게 되므로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한다는 의미는 수급자가 다니는 학교(실 거주지)를 관할한다는 의미로 해석

– 따라서 급여 신청자의 소재지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도·시·군·구에서 교육급여 예산 부담

시·도·시·군·구 별 연간 보조금 예산 산출 식

○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 초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x41,200x보조비율*

– 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x(41,200+54,100)x보조비율

–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x(41,200+ 54,100+93,300***)x보조비율

– 고등학생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x1,335,400****x보조비율

* 보조비율 :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 타 급여의 예산부담비율에 준하여 반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교과서대 평균 단가이며, 실제 지급액은 학생이 구입한 교과서 실비에 따름

**** 입학금·수업료 평균 단가이며, 시·도교육청 별로 입학금·수업료 기준액은 다름

– (예외) 시·군·구별 재정부담 문제로 시·도, 시·군·구, 교육청이 협의하여 해당 시·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의 시·군·구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결정한 경우, 타 시·도에 주소지가 있으나 해당 시·도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장 비용은 학적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타 시·도에 부담이 없도록 조치

(예시) A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가 32명인 경우

정산 방식	원칙	예외
a구	a구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14명 (a구 주소지10명, b구 주소지 3명, B도 주소지 1명)	a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급자 12명 (a구 주소지 11명, B도 주소지 1명)
b구	b구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7명 (a구 주소지 1명, b구 주소지 4명, B도 주소지 2명)	b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급자 10명 (b구 주소지 8명, B도 주소지 2명)
c구	c구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11명 (b구 주소지 1명, c구 주소지 10명)	c구 주소지 수급자 10명 (c구 주소지 10명)

※ 예외적인 방법으로 보장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산내역과 정산 내역이 상이해짐

○ ’17년 예산 이체 및 보조 방법

- 국고 :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
- 지방비

① 교육부에서 지자체, 시·도교육청에 가내시(’16.9월)→확정내시(’16.12월)

② 시·군·구 예산 확보(’16.10~’17.1)

③ 시·도교육청이 시·도에 지방비 이체 요청 공문 송부(’17.1~2)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2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등이 적용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공문으로 교부 요청 및 정산

* 교육청에서 시·군·구별로 산출하여 교부를 요청한 예산이 교육부의 확정 내시와 다를 수 있음

④ 시·도·시·군·구에서 지방비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체 (’17.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국고 비율에 맞추어 확보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교부
- 교부요청한 예산의 최소 70%를 2월~9월 중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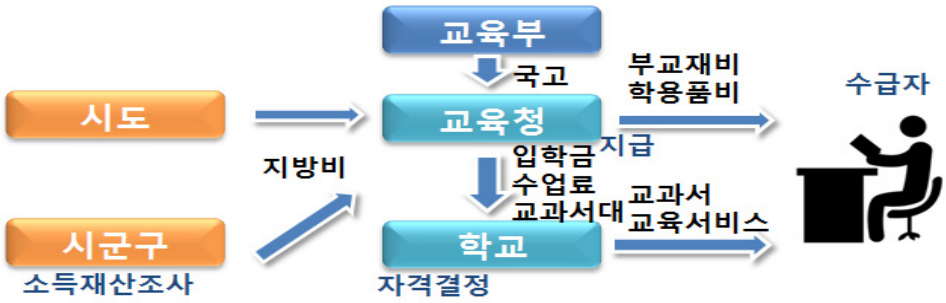
** 지자체 예산 편성 과목 : 교육기관에 대한보조(308-08) (5.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행정자치부)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⑤ 교육부는 예산 과부족분을 반영하여 9월 말에 시·도, 시·군·구에 변경 내시하고, 시·도, 시·군·구는 이를 연말 추경에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에 보조금으로 교부

- 시·도, 시·군·구교육부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과부족분을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에 12월 10일까지 지방비 교부

[교육급여 예산 흐름도]



○ 정산 : 시·도교육청은 이듬해 3월까지 국가, 시·도, 시·군·구 별로 교육급여 집행액(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을 정산하여 통보

* 해당 연도의 예산 집행 이후 이듬해에 반납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에 포함하여 반납

○ 국고보조금 관련 월별 진행사항

월	지자체 국고보조금 관련 진행 사항	비고
전년도 9월	이듬해 국고보조금 가내시	중앙부처
전년도 11~12월	가내시 자료를 기초로 이듬해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12월말~1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12월말 ~ 1월) 국고보조금 교부(1~12월)	중앙부처
1~2월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적 및 정산보고(2월)	지방자치단체
3~7월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에 대한 검토·확정 통보(3~4월)	중앙부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편성(4~7월) – 가내시 기준 예산을 확정내시를 반영·수정 – 전년도 정산 확정에 따라 반납 예산 반영 및 납부	지방자치단체
9~10월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및 내시변경 – 지자체로부터 3/4분기까지 실적 및 4/4분기 소요추계를 파악하여 변경내시	중앙부처
10~12월	지방자치단체 당해연도 정리추경예산 편성 – 변경내시액에 맞추어 정리추경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교특회계 예산편성체제

구분			편성과목 등
세입	국고보조금		11201 국고보조금 목
	광역자치단체이전		12106 교육급여보조금 목 (광역자치단체보조금 원가통계목)
	기초자치단체이전		12106 교육급여보조금 목 (기초자치단체보조금 원가통계목)
세출	교육청에서 직접집행	세부사업	[01] 학비지원 단위사업 내 [04] 교육급여지원
		성질	310–01 보상금 세목 (사회보장적수혜금 또는 장학금 및 학자금 원가통계목)
	학교회계로 전출	세부사업	[01] 학비지원 단위사업 내 [04] 교육급여지원
		성질	620 학교회계전출금 내 공·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비목 (620–03 목적사업비 또는 620–10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등)

Ⅲ 교육급여 수급자 혜택 안내

○ 요금 감면('16.12.31.기준)

감면 내역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	문의
통신 요금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최대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수급자 포함 가구원 4명까지 지원)	○ 각 통신사에 명의자 본인이 전화 (휴대폰으로 ☎114)	각 통신사 (미래창조과학부 ☎1335)
양곡 할인	○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 주민센터	주민센터
각종 공공 요금	○ 전기요금 감면(월 4천원)	○ 한국전력지사 방문접수(수급자 증명서 필요) 또는 FAX ○ 인터넷 (www.kepco.co.kr/cyber)	한국전력(☎123) 주민센터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월 평균 3,100원)	○ 주민센터	주민센터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일괄 면제	○ 신청 불필요	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센터	주민센터
문화 활동비	○ 문화누리카드 연간 5만원 지원	○ 인터넷(www.munhwanuricard.kr)에서 바로 자격검증 확인 후 카드발급 신청 ○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관리센터 (☎1544-3412)
우유 급식	○ 무료 우유급식 지원	○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선정	학교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지자체 별 상이)	○ 주민센터	주민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지원	○ 전화상담(☎132),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 방문상담 등	전국 130개 공단 사무소
	○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단열, 창호, 바닥공사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 (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52~8)
	○ 궁능무료 입장	○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무료 입장	○ 문화재청

* 각 부처에서 지원 대상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 담당부서에 확인

○ 상급학교 진학 시 지원

- (고교 입학)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외고, 과학고, 국제고) 「사회 통합 전형」의 「기회균등전형」에 응시 가능하며, 해당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
- (대학 입학) 정원 외 입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또는 고른 기회 입학 전형에 응시 가능하며, 대입 전형료를 면제/감면하고, 해당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차상위 기준으로 국가 장학금 지원 (I 유형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기타 교육비 지원(초중등교육법 60조의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 존재

Ⅰ 제7편 Ⅰ

서 식

교육급여 관련 서식은 2017년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맞춤형 급여의 10편 서식 p.388~p.437을 참조



제　　작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Homepage : http://www.moe.go.kr(교육부)

교육급여 지침과 관련된 질의는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